

연구자복지법에서의 연구자 정의와 여성연구자에 대한 항목

김명하

1. 연구자권리선언과 연구자복지법. 보편적 권리와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김민환(한신대)

법 제정에서 대상을 명확히 정의내리는 것은 규정하고자 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자권리선언은 “연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 “호기심을 품은 모든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자를 정의하는데 이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연구자권리선언이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비정규직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다. 연구자복지법이 연구안정성을 확보받지 못한 연구자들의 안전망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면 대상의 범주를 축소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시행령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구자복지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정민영(법무법인 덕수)

특히 헌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법의 정당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 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근거하여 “논문, 번역, 연구보고서 등의 학문 저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연구자권리선언 및 연구자복지법의 연구자에 대한 정의에서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한국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 및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단상. 박서현(제주대)

생산의 변화에 따라 정규직 노동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은 증가되며 노동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규직 또한 생산성 압박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자권리선언 및 연구자복지법을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주요 논거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동일한 관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가능한 구호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당장의 현실에선 이를 바로 수
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범위, 제공되는 정보
의 차이, 그에 따른 업무의 파편화 등이 가져오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다면 정규직의 지속이나 확장에 대한 고민을 단순화시키긴 어렵다. 프레카리아
트화가 인구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심화와 확대, 커먼즈 운동으
로서의 연구자 운동 등이 지속되어야 하나 동시에 정규직의 확장에 대한 논의
나 요구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어떤 면에선 연구자권리선언이나 연구자복지법
이 정규직 확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4.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지체경험을 통해 본 노동환경과 돌봄권. 김향수(사 회건강연구소)

돌봄자로서의 여성이란 특별한 위치와 비공식적 mommy penalty가 뿌리깊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권리선언 및 연구자복지법에서 여성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현 연구자권리선언에서 연구
자의 평등은 제3조에서 폭넓은 보편적 평등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현
실에서의 실제적 차별을 방어하기는 어렵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여러 수치에서
도 보여지듯 여성연구자는 연구직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입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여성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자권리선언과 연구자복지법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5. 지방 전문대 교수의 입장에서 교수 및 연구자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정규직 확대에 대한 의견.

대학, 특히 인문사회 분야는 여러 위기담론을 앞세워 비정규직 교수자 및 연구
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 다양한 이름과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 및 연구자 문
제는 당사자의 생존 뿐 아니라 대학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강의전담, 산학협력, 비정년트랙 등 비정규직 교
수의 학생지도 배제, 학과 운영 배제는 교수 당사자에게도 차별이지만 학생에
게도 지도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며 지도의 질적·양적 하락을 가져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자 및 연구자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 교수자 및 연구자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보통 사립대학의 투
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지만, 2021년 기준 국공립 34개 대학의 학생수 442,654명, 사립 156개
대학의 학생수 1,495,600명인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은 국가장학금, 학술연구

등을 제외하고 국립대에 별도 지원되는 것과 달리 사립대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2022년 고등교육 예산 12조원 중, 국립대 예산은 이미 4.5조원에 달한다. 부실사립대학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과 더불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특히 정규직 교수자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사립대에도 1,495,600명의 학생이 있다.